

(사업방법서 별지)

1. 보험종목의 명칭

가. 보험종목의 명칭

무배당 알리안츠마이플랜저축보험

나. 보험의 종류

월 공시이율형, 연 공시이율형

2.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입나이 및 보험료 납입주기

| 보험기간 | 보험료 납입기간 | 남자 | 여자 | 최저보험료 | 보험료 납입주기 |
|-------|---------------|-------------|-------------|-------|----------|
| 5년만기 | 3년납 | 만 15세 ~ 60세 | 만 15세 ~ 60세 | 50만원 | 월납 |
| 7년만기 | 3년납 | 만 15세 ~ 62세 | 만 15세 ~ 70세 | 40만원 | |
| | 5년납 | 만 15세 ~ 52세 | 만 15세 ~ 63세 | 30만원 | |
| | 전기납 | 만 15세 ~ 60세 | 만 15세 ~ 60세 | 50만원 | |
| 10년만기 | 3년납 | 만 15세 ~ 67세 | 만 15세 ~ 70세 | 30만원 | |
| | 5년납 | 만 15세 ~ 65세 | 만 15세 ~ 70세 | 15만원 | |
| | 7년납 | 만 15세 ~ 68세 | | 20만원 | |
| | 10년납 | 만 15세 ~ 67세 | | 20만원 | |
| 15년만기 | 3년납 | 만 15세 ~ 57세 | 만 15세 ~ 65세 | 15만원 | |
| | 5년납 | 만 15세 ~ 68세 | 만 15세 ~ 70세 | | |
| | 7, 10년납 | 만 15세 ~ 70세 | | | |
| | 12년납, 전기납 | 만 15세 ~ 68세 | | | |
| 20년만기 | 3년납 | 만 15세 ~ 57세 | 만 15세 ~ 64세 | | |
| | 5년납 | 만 15세 ~ 67세 | 만 15세 ~ 70세 | | |
| | 7년납 | 만 15세 ~ 69세 | | | |
| | 10년납 | 만 15세 ~ 70세 | | | |
| | 12, 15년납, 전기납 | 만 15세 ~ 68세 | | | |
| 30년만기 | 3년납 | 만 15세 ~ 53세 | 만 15세 ~ 59세 | | |
| | 5년납 | 만 15세 ~ 60세 | 만 15세 ~ 64세 | | |
| | 7년납 | 만 15세 ~ 63세 | 만 15세 ~ 67세 | | |
| | 10년납 | 만 15세 ~ 65세 | 만 15세 ~ 70세 | | |
| | 12년납 | 만 15세 ~ 66세 | | | |
| | 15, 20년납, 전기납 | 만 15세 ~ 68세 | | | |

3. 의무가입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4. 배당에 관한 사항

배당금이 없음

5. 보험료에 관한 사항

가. 기본보험료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납입하기로 약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기본보험료의 한도는 아래와 같다.

| 만기 | 납기 | 가입한도 |
|-------|-----|---------------|
| 5년만기 | 3년납 | 월 보험료 50만원 이상 |
| 7년만기 | 전기납 | |
| | 3년납 | 월 보험료 40만원 이상 |
| | 5년납 | 월 보험료 30만원 이상 |
| 10년만기 | 3년납 | 월 보험료 20만원 이상 |
| | 전기납 | |
| 기타 | | 월 보험료 15만원 이상 |

나. 추가납입보험료

1) 기본보험료 외에 보험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3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보험료 납입한도에 따라 추가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추가납입보험료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로 구분된다.

(1)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3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한다.

- 계약자는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변경 및 종지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익월 납입기일부터 적용한다.

-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1회 5만원 이상 납입하여야 하며, 기본보험료

의 2배 이내에서 가능하다.

-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는 매월 기본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에 기본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기간 이후에는 계약자가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 신청시 매월 납입하기로 한 날에 납입한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초과시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는 자동으로 납입중단된다.
- 해당 시점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차회 이후의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의 납부시 미납입된 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2) 수시추가납입보험료 : 계약자가 보험계약일 이후 1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기간 종료일의 3년 전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수시로 납입하는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한다. 수시추가납입보험료는 1회 5만원 이상 납입하여야 한다.

2)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

계약자가 추가납입 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월정기추가납입보험료와 수시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은 납입기간 동안 납입하기로 약정한 기본보험료 총액의 200% 이내에서 시중금리 등 금융환경에 따라 매년 회사에서 정하는 한도로 하며,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한도는 경과 기간별로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다.

$$\begin{aligned} & \text{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 \\ & = \text{해당월까지의 납입할 기본보험료(선납포함)} \times 200\% \\ & \quad - \text{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 \end{aligned}$$

- 3) '2)' 에서 시중금리에 따라 납입한도를 축소하는 경우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의 직전 3개월 월평균 이율이 이 계약의 최저보증이율(연복리 1.5%) 이하로 하락하여 3개월 이상 계속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 4) 납입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2)' 의 한도를 적용한다.

6.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매월 기본보험료가 100만원 초과인 계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할인한다.

| 할인조건 | 할인금액 |
|----------------|------------------------|
|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 | 기본보험료 100만원 초과금액의 2.0% |

7. 보험료 선납에 관한 사항

- 가. 선납보험료는 매년 당월분을 포함하여 6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한다.
- 나.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공시이율로 부리 적립하며, 당해보험료는 납입 해당일에 대체한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한 사항

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

9. 연체이율에 관한 사항

연체보험료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체기간에 대하여 공시이율을 적용한다. 공시이율이 연체기간 중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10.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부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기간 중 보험년도 기준 연 4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다.
- 나. 1회당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하며,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원리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의 해지환급금은 제외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한다.
- 다. ‘나’ 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적립금이 향후 위험보험료 등 계약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으며, 최초 납

입일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회사에 실제 납입한 기본보험료(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제외) 및 추가납입보험료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계약자적립금의 중도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하 "추가납입보험료적립금"이라 한다) 이내에서 우선적으로 인출하고 추가납입보험료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한다.

11.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

가.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에 대한 부리이율은 공시이율로 한다.

나.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월 공시이율형의 경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하고, 연 공시이율형의 경우 계약건별로 보험계약일부터 매 1년간 확정 적용한다. 다만,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월 공시이율 또는 연 공시이율의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다. 회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공시기준이율에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이율을 결정하며, 공시이율은 공시기준이율의 90% ~ 110%범위 내에서 정한다. 다만, 급격한 금융시장 환경변화 등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경우에는 조정률의 상한을 초과하여 결정할 수 있다.

$$\text{공시기준이율}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times \alpha + \text{운용자산이익률} \times (1 - \alpha)$$

(1)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begin{aligned} & \text{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 \\ &= \text{국고채(5년) 수익률} \times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 \text{회사채(무보증 3년, AA-) 수익률} \times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 \text{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 \times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 \text{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 \times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end{aligned}$$

(나) 외부지표 공시기관 등이 상기 외부지표금리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는 사유 등으로 다른 지표금리로 대체하여 공시하는 경우에는 그 대체된

지표금리를 사용할 수 있다.

- (다) 국고채(5년), 회사채(무보증 3년, AA-) 및 통화안정증권(1년) 수익률과 양도성예금증서(91일) 유통수익률은 공시기준이율 적용시점의 전전월말 직전3개월 가중이동평균을 통해 산출한다.
- (라) 국고채 가중치(β 1), 회사채 가중치(β 2), 통화안정증권 가중치(β 3), 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β 4)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여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text{국고채 가중치}(\beta 1) = \frac{a}{a+b+c+d}$$

$$\text{회사채 가중치}(\beta 2) = \frac{b}{a+b+c+d}$$

$$\text{통화안정증권 가중치}(\beta 3) = \frac{c}{a+b+c+d}$$

$$\text{양도성예금증서 가중치}(\beta 4) = \frac{d}{a+b+c+d}$$

- a는 회사가 보유한 국내 발행 국공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b는 회사가 보유한 회사채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c는 회사가 보유한 통화안정증권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d는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예금증서의 직전년도 평균 잔고(월평잔의 평균)
-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0%이상 100%이하로 결정한다.

(2) 운용자산이익률

- (가) 운용자산이익률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운용자산이익률} = \text{운용자산수익률} - \text{투자지출률}$$

- (나) 운용자산수익률은 산출시점 직전 1년간의 자사의 투자영업수익을 기준으로 산출하며, 투자지출률에 사용되는 투자비용은 동 기간동안 투자 활동에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운용자산수익률(%)

$$= \frac{2 \times I}{\sum_{t=1}^{12} [\text{직전}(t+1)\text{개월말 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 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투자지출률(%)

$$= \frac{2 \times E}{\sum_{t=1}^{12} [\text{직전}(t+1)\text{개월말 운용자산} + \text{직전}(t)\text{개월말 운용자산}] / 12 - (I - E)} \times 100$$

- **I**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수익
- **E** : 직전 1년간의 투자영업비용

(다) 운용자산은 당기손익에 반영되지 않은 운용자산관련 미실현손익을 제외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한다.

(3)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

(가) 가중치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text{외부지표금리의 가중치}(\alpha) = \frac{A/B+C}{A+C}$$

$$\text{운용자산이익률의 가중치}(1-\alpha) = 1 - \frac{A/B+C}{A+C}$$

- A :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
- B :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 C : 직전년도 수입보험료

(나) 직전년도는 사업년도 개시 3개월 이전 12개월을 말한다.

(다) 가중치는 0.5%포인트 단위로 반올림하여 결정한다.

(라) 가중치는 사업년도에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60%를 초과할 수 없다.

(마) 「직전년도초 보험료적립금」과 「자산의 직전년도말 듀레이션」, 「수입보험료」는 계정별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바) 「수입보험료」는 원수보험료를 말한다.

라. ‘가’의 공시이율은 동종상품[‘가’에 따라 공시이율이 운용되는 상품]의 해당 공시이율보다 높게 적용한다.

마. 회사는 계약자에게 연1회 이상 공시이율의 변경내용을 통지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지(상품공시실)에 공시이율과 공시이율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공시한다.

바.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복리 1.5%로 한다.

사. 공시이율의 세부적인 운용방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공시이율운용지침」에 따른다.

12. 보험계약대출에 관한 사항

가.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대출”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나. 계약자는 ‘가’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할 수 있다.

다. 회사는 약관 제14조(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차감한다.

라. 회사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마. 이 보험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 + 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가중평균한 이율로 한다.

13.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으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

가.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의 보험료는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된다.

나. 무배당 연금전환특약은 전환시의 기초서류(사업방법서, 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및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14. 기타

가. 보험가입금액

이 보험의 계약 보험가입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기본보험료 × 12 × MIN {10, 보험료 납입기간}

나. 장기납입보너스 적립에 관한 사항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60회 완납한 계약에 한하여 주계약 기본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납입시(선납시 해당 납입회차 계약해당일) 실제 납입한 납입회차를 기준으로 아래 장기납입보너스 해당금액을 계약자적립금에 가산하여 적립한다.

| 납입회차 | 장기납입보너스 금액 |
|---------|-------------|
| 61회차 이상 | 기본보험료의 0.5% |

다. 보험기간, 납입주기, 납입기간 외 가입나이, 가입한도 등 계약인수관련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라. 회사는 상품명칭 앞에 계약자가 원하는 이름이나 판매경로 등을 인식할 수 있는 용어를 덧붙여 보험안내자료 및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할 수 있다.

마. 만기시점 계약자적립금의 최저 보증에 관한 사항

- 1) 만기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한도로 한다.
- 2) '1)' 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라 함은 매월 납입하기로 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 납입보험료의 합계(특약보험료 제외)를 말한다. 다만, 계약자가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거나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한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계약자적립금의 중도인출 또는 기본보험료 감액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한다.

▪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text{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text{인출 직전 계약자적립금}}$$

▪ 감액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text{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times \frac{\text{감액 직후 계약자적립금}}{\text{감액 직전 계약자적립금}}$$

- 3) '2)'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하는 경우의 '인출(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란 해당 인출(감액)이 발생하기 전에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2)' 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한다.